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1264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1. 12. 23.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22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3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22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3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1. 2. 25. 접수 제32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2449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7. ‘C이 원고에게 11,665,928원 및 그 중 6,646,3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7. 4. 22. C에게 송달되어 2017. 5. 9.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원고의 대위 신청에 따라 2021. 2.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22 지분,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3 지분에 관하여 C에게 2012. 4. 1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다. C은 2021.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1. 2. 25. 접수 제329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위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2. 26. 원고에게 C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3,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법 제479조에 의하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돈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원금 6,646,390원에 대한 2017. 4. 23.부터 2021. 2. 12.까지 1392일 동안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3,802,099원에 충당되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11,668,027원(= 이 사건 지급명령상 인용금액 11,665,928원 + 2021. 2. 12.자 이자 중 변제되고 남은 2,099원) 및 위 돈 중 6,646,390원에 대하여 2021.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 C의 소유가 아니라 가족의 공동 소유이고,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 피고는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원고의 대위 신청에 따라 2021. 2. 5.

D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C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승